
위험성평가 실시 가이드

1. 정의

■ 유해위험요인

-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인들을 의미
 - 이 가능성은 기계·장비, 물질, 운송 과정, 작업 부산물, 작업방식, 관행 및 태도 등이 있음
 - 사람의 신체적 부상 또는 질병을 가져올 잠재적인 요인, 원인, 근원 등을 포함함

■ 위험성

- 유해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함
 - ‘가능성’은 작업자의 부상·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말하며, 피해의 회피·제한 가능성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중대성’은 부상·질병이 발생했을 때 미치는 영향의 정도(강도 또는 심각성)를 말하며,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치료기간, 사망 후유장애 유무, 피해의 범위(한 사람, 여러 사람)를 고려하여야 함

1. 정의

■ 위험성평가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 및 실행하는 과정을 말함
 - 노동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위험이 얼마나 중대한지(강도),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빈도),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지, 노동자 의견은 어떠한 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함

2. 법·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1. 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주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법의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노동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노동자를 참여시켜야 함**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
-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2. 법·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2. 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①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② 위험성 결정의 내용
 - ③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④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한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함
 -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5년간 보존하는 것이 타당

2. 법·제도

■ 중대재해처벌법

1.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함

-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및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가 첫 번째이고, 그 다음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므로 위험성평가 등 법 준수는 꼭 필요

2. 법·제도

■ 중대재해처벌법

2. 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규칙 및 이행조치)

-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봄

2. 법·제도

■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고시 주요 내용

제5조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는 사업주▶ 도급사업주, 수급사업주는 각각 위험성평가 실시
제5조의2 (위험성평가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 중 관련 유해·위험요인이 대상▶ 아차사고도 대상에 포함
제6조 (근로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전준비 단계부터 모든 단계에서 참여
제7조 (위험성평가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관리체제 역할 부여▶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등 방법 추가
제8조 (위험성평가의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인 미만 사전준비 생략▶ 위험성 추정과 위험성 결정의 통합
제9조 (사전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성 수준 및 판단 기준 등 사전 확정▶ 실시규정 작성 및 안전보건정보의 활용
제10조 (유해·위험요인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회점검에 의한 파악은 반드시 포함▶ 상시 제안에 의한 방법 추가
제11조 (위험성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에 확정된 기준으로 위험성 결정
제12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소대책 수립에는 우선순위를 둬▶ 대책 이행 후 위험성 결정 과정의 반복
제13조 (위험성평가의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성평가 결과의 게시·주지 의무▶ TBM에서의 전파 산실
제14조 (기록 및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성평가 완료 시 안전보건정보 등 기록 및 보존
제15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평가는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 정기평가는 위험성 결정부터 재검토▶ 매월, 매주, 매일 상시 이행하는 상시평가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시기

1. 최초평가

○ 처음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실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험성평가를 착수하여야 함

- 1개월 미만의 기간이 걸리는 작업이나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업개시 이후 지체없이 최초평가를 시행하여야 함

※ 위험성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공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는 형법에 의한 벌과 민법의 책임을 져야 하므로, 따라서 작업개시 전 위험성평가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시기

1. 최초평가

○ 가급적 **사업 개시 직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곧바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초평가를 할 때는 사업장의 전체 공정·작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위험성 평가를 하여야 함
- 위험성평가 시 종사자 전원 및 이해관계자도 함께 참여하여야 함

※ **사업장 방문객의 안전도 보장**하여야 하므로 모든 출입자는 위험성평가 대상이 됨에 따라 **출입 시 안전수칙, 위험요인, 비상대피 등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시기

1. 최초평가

○ 위험성평가 시기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시기

2. 수시평가

- 사업장에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거나, **기존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수시 위험성평가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변경관리, 개보수, 제안, 아차사고 시에는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를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함

- 수시 위험성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시기

3. 정기평가

- 매년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 결과를 통해 개선대책의 적정 이행 여부도 확인하여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관련 반기 이행점검과 함께 실시할 것을 권장
- 정기평가 시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노동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안전보건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의 습득,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에 대해 재검토 하여야 함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시기

4. 상시평가

- 유해위험요인이 자주 변동하거나 매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상시평가를 통해 정기 위험성평가를 인정할 수 있음

※ 작업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 OPS, 3단계법 등은 정기 위험성평가로 인정할 수 있으며, 상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최초 위험성평가는 실시하여야 함

- 다만, 공정·기계·기구·물질 변화가 매우 커 처음부터 전체 공정이나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어려울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향후 예상되는 공정들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순회점검, 노동자 제안, 아차사고 발굴 시 위험도를 파악하고 개선 이행하였다면 그 증빙은 정기 위험성평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행 여부의 적정성은 책임자·관리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확인하여야 하며, 상시평가 결과와 노동자 준수사항은 TBM 시 모든 종사자에게 공유하여야 함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시기

4. 상시평가

○ 상시평가 제도 체계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절차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의 경우 사전준비를 생략할 수 있음

※ 위험성평가의 성패는 모든 종사자의 참여이며 소수의 서무, 감독자만 참여한다면 현장의 위험이 누락될 수 있고 종사자의 자발적 안전규정 준수도 어려워 현장안전을 확보할 수 없음

○ 사업주 위험성평가 절차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시	공유·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규정 작성- 담당자·참여자 선정- 사고사례 수집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사합동 순회점검- 아차사고 분석- 제안제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성 수준 판단 및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순위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TBM, 교육 등을 통해 공유 및 기록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절차

-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만들 책임이 있는 **사업주**이며, **사업주의 책임하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노동자가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함
 -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관리감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절차

1.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및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의 판단기준을 정하고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 위험성평가 준비자료 중 작업표준(SOP), 출입자 동선, 원부자재 이동 경로, 청소 및 유지 절차, 사용설명서, 비상대응 시나리오, 안전점검, 안전순찰, 아차사고, 동종업계 사고사례, MSDS, 작업환경 측정결과, 건강검진 시사점, 안전작업 허가 실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함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절차

1. 사전준비

1) 위험성평가의 지속 운영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소 위험성평가 시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평가시기 및 절차
4. 노동자에 대한 참여·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5. 결과의 기록·보존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절차

1. 사전준비

2) 위험성평가 판단기준 확정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을 확정**하여야 함

3) 위험성평가 시 반영할 정보

- 사업주는 **사업장 안전보건 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하여야 함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3.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동자 건강진단 결과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절차

2.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노동자들의 상시적인 제안 제도, 평상시 아차사고 발굴 등을 통해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여야 함

- 사업주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시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설정에 따라 아래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순회점검을 포함하여야 함

※ 모든 종사자와의 대화, 상담, 회의를 통해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위험요인을 모두 발굴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기록 등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함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노동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3. 설문조사·인터뷰 등 청취 조사에 의한 방법
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 결과, 특수건강진단 결과 등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5.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6.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절차

3. 위험성 결정

- 사전준비 단계에서 미리 설정한 **위험성의 판단 수준**과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크기** 등을 활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추정·판단하고 결정하여야 함**
 - 빈도(가능성, 확률)와 강도(심각도, 중요도)는 고, 중, 소 3단계로 구분
 - 발생주기(빈도) 예시 : 매일 또는 매주 1회, 그 사이 1회, 1년 1회 또는 3년 1회
 - 상해심각(강도) 예시 : 내일 출근할 수 있는 사고, 그 사이, 3개월 입원 또는 사망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절차

4. 위험감소 대책 수립 및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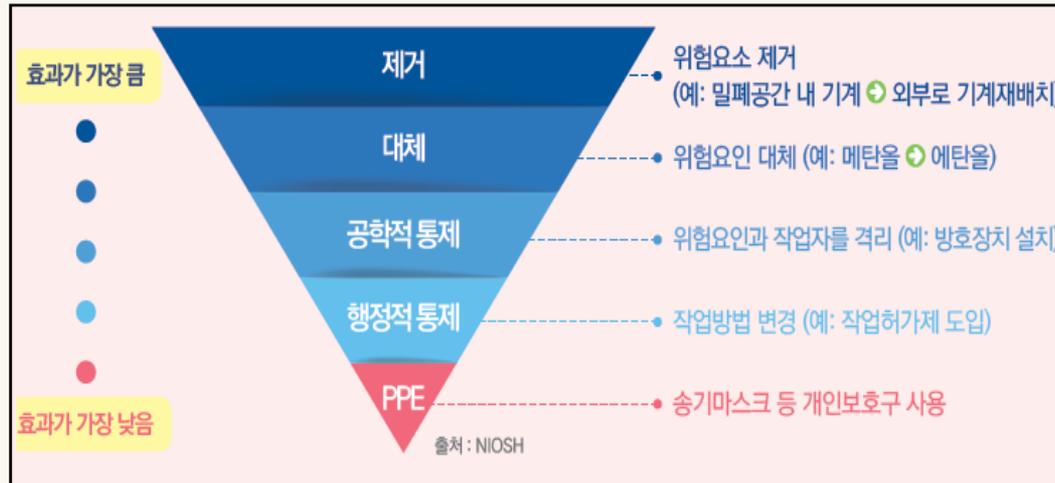
-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유해위험요인의 위험 수준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는다면,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 위험성 감소대책 순서
 - ① 위험작업을 완전 폐지하거나, 기계·기구, 물질의 변경 또는 대체를 통해 위험을 본질적으로 제거
 - ② 인터록, 안전장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유해위험요인의 유해성이나 위험에의 접근 가능성 줄이는 공학적 방법 검토
 - ③ 작업 매뉴얼을 정비하거나, 출입금지·작업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노동자들에게 주의사항을 교육하는 등 관리적 방법 검토
 - ④ 개인보호구의 사용 검토(개인보호구는 앞선 위의 방법과 함께 사용을 권장)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절차

4. 위험감소 대책 수립 및 실시

-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함
-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절차

5. 공유·기록

1.1 공유

-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모든 증빙을 기록하고 **노동자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공유하여야 함**

1. 노동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
2.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3.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4.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노동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 Tool Box Meeting)를 통해 노동자에게 상시 알려주어야 함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절차

5. 공유·기록

1.2 기록 및 보존

○ 사전조사, 개선이행 여부, 종사자 공유 등을 포함한 **위험성평가 기록**은 사업장 작업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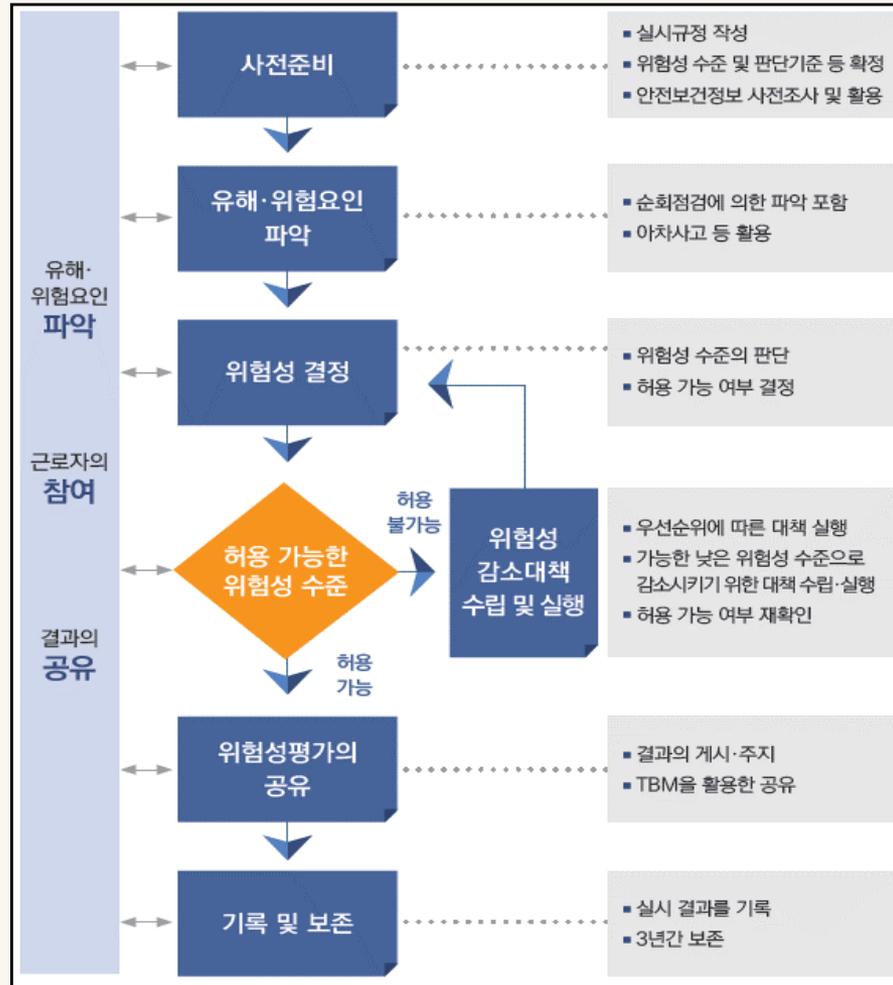
안전점검회의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기록은 수시평가와 정기평가 재검토를 위해서도 당연히 기록되어야 하며, 만약의 사고나 감독관청에서 요구 시 증빙자료로 제시하여야 함

※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기록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함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절차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방법 및 효과 설명

1. 작업표준(SOP, SWP)

- 작업표준(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afe Work Practices)이란 제품 또는 부품의 각 제조공정을 대상으로 **작업조건, 작업방법, 관리방법, 사용재료, 사용설비, 작업요령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것임**

- 작업표준은 위험성평가 준비자료 중 가장 중요한 자료로 작업표준이 없는 중소기업 사업장은 반드시 위험성평가 전 작업표준을 작성하여야 함

- 작업표준은 **작업을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각 작업별 프로세스를 분류하여 그 **프로세스별 사진과 설명(안전사항 반드시 포함)을 기입하여 작성**

- ※ 작성된 작업표준은 노동자대표와 사업주에게 승인받고, 만일 작업표준을 위반한 종사자는 처벌(주의→경고→벌)하여야 하며 작업표준과 안전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묵인한 관리자는 그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방법 및 효과 설명

2. 작업표준 예시(조명 제조업)

< 작업표준 작성 예시 >
ex) 원자재 입고 작업



no	작업순서 및 사진	위험요인	안전한 작업방법
1	[원자재 차량 입고] 	보행자와 충돌위험	- 회사 내 차량 속도는 20km/hr 이하 서행 - 운전자는 지정 위치에 정차하고 시동 OFF 및 브레이크 - 자동차키는 키보관함에 넣어두고 바퀴에 고임목 2개 설치함
2	[하차 준비] 	지게차와 보행자 충돌위험	- 지게차(1.5ton)와 추돌위험지역에 유도자배치 - 지게차 작업반경 내 작업자 확인 및 접근 금지조치
3	[하역] 	중량물 전도위험	- 적재함 위에 작업자 탑승금지 - 중량물 하역시 전도되지 않도록 무게 중심잡고 하역후 운반 전 지게차에 고정
4	[지게차 이동(하역장→창고)] 	보행자 충돌위험	- 지게차 백존, 경광등 조작 - 신호수 배치(보행자 접근통제) - 지정통로로 이동 - 지정속도(4km/hr) 이하 운전 - 시야 미확보 시 후진이동
5	[창고 입고] 	급회전으로 운반물 전도 급회전으로 지게차 전도	- 입구 경사로에 지게차 회전금지 - 자재창고내 보행자 뛰는 행동 금지 - 보행자 지정통로의 보행금지 - 제품검수원은 하역완료 후 검수 실시 - 적재시 불안정한 경우 안전하게 재적재
6	[품목별 입고검사] 	자키 운반시 전도위험 포장제거시 배입위험	- 자키 주변 작업자 통제 - 제품 무게중심과 자키중심 일치확인 - 컷터나이프는 두칸이내 노출사용 - 배입 방지장갑 착용 - 컷터 나이프 사용시 주변작업자 배입 위험노출되지 않도록 주변확인후 작업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의 활용

1. 자율안전의 핵심

- 위험성평가는 정부가 모든 위험한 상황을 예상하여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위험성평가는 사고예방 활동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활동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도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이 따르고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나 너무 부실하게 한 경우 등으로 종사자 사망 시 가중 처벌을 받게 됨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의 활용

2. 함께 참여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참여해야만 현장에서 실제 실행이 가능한 제도**임
 - 위험성평가는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위험성 평가 결과의 공유 등 전체 과정에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의 참여가 필수
 -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의 취지를 제대로 알리고 노동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함
- ※ 위험성평가에 모든 종사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단지 형식적인 서류에 불과할 것이며 모든 종사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는 그 자체가 좋은 실습형 현장 안전교육이 되며 참여를 통해 안전습관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자발적 현장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의 활용

3. 상시운영 체계

-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별로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하기만 하면 종료되는 개념이 아니라 **위험성의 수준이 허용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위험성이 허용 가능할 때까지 줄이거나 위험성을 완전 제거하고자 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과정임**
 - 새롭게 추가되는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인 재검토와 결과 업데이트가 필요한 지속적 과정임
- ※ 위험성평가의 성패는 자율적 참여, 모두 참여, 지속적 준수 및 개선임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의 활용

4. 종합

-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인 재검토와 업데이트가 필요한 지속적인 과정임**
- 사업주는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통해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 노동자는 위험성평가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잠재된 유해위험요인과 필요한 조치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훈련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교육에도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발굴 관리하여 사고,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사업장 손실을 줄일 수 있음**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방법 사례

1. 빈도·강도법

1) 정의

- 빈도·강도법은 사업장에서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곰셈, 덧셈, 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수준)를 산출함으로써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
 - 빈도·강도법 위험성평가 방법은 오랫동안 검증되어 안정된 평가 기법이며 위험성 결정에 있어, 3×3 평가척도를 활용한다면 위험성평가를 손쉽게 실시할 수 있어 가장 추천하는 평가방법임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방법 사례

1. 빈도·강도법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공정·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② 위험성 결정

“5×4” 또는 “3×3” 등의 평가척도를 이용해 위험성의 크기를 구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



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안전조치 실시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방법 사례

1. 빈도·강도법

2) 위험성평가 대상 선정

- 사업장의 공정, 작업, 장소, 기계·기구, 물질, 부품, 작업 행동, 가스, 분진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간 있었던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의 대상을 선정함**

3) 위험성 결정

(1) 빈도·강도 조합

유해위험요인을 꼼꼼하게 파악했다면 그 유해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각각 가늠하여 그 둘을 곱한 수로 나타냄

※ 반드시 빈도, 강도 점수를 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더하거나 행렬로 조합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음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방법 사례

3) 위험성 결정

(1) 빈도·강도 조합

- [빈도] ☞ 유해위험요인에 얼마나 자주 노출되는지, 얼마나 오래 노출되는지, 며칠에 한 번 아차사고가 발생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숫자로 나타낸 크기
예) ① :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3개월에 1회), ② : 가끔 발생하는 경우(1주일에 1회), ③ :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1일에 1회)
- [강도] ☞ 위험한 사고로 인해 누구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
예) ① : 치료 불필요한 경우(소), ② : 휴업이 필요한 경우(중), ③ : 사망이나 장애 발생(대)

빈도의 크기 산출 기준			강도의 크기 산출 기준		
구분	빈도의 크기	기준	구분	강도의 크기	기준
빈번	3	1일에 1회 정도	대	③	사망(장애 발생)
가끔	②	1주일에 1회 정도	중	2	휴업 필요
거의 없음	1	3개월에 1회 정도	소	1	비치료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방법 사례

3) 위험성 결정

(2) 허용 가능 여부 결정

- 빈도와 강도를 곱하거나 더해서 나온 위험성의 크기는 다양한 숫자로 나타나게 되는데, 도출된 숫자가 바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크기이며 이를 사전에 노동자들과 상의하여 준비한 '허용 가능 위험성의 크기'와 비교
- 예를 들어 3×3 평가방법을 사용하면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크기는 1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로 나타나게 되며, 사업장에서 3까지의 위험성 크기만을 허용 가능하다고 정해 놓았다면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이 4, 6, 9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이행이 필요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방법 사례

3) 위험성 결정

(3) 빈도·강도 조합(3×3 평가방법 예시)

구 분	빈 도 × 강 도	위험성	허용 가능 여부	개선 여부
1	1 × 1	①	허용 가능	필요 시 개선
2	1 × 2	②	허용 가능	필요 시 개선
3	1 × 3	③	허용 가능	필요 시 개선
4	2 × 1	②	허용 가능	필요 시 개선
5	2 × 2	④	허용 불가능	개선대책 마련 및 이행
6	2 × 3	⑥	허용 불가능	개선대책 마련 및 이행
7	3 × 1	③	허용 가능	필요 시 개선
8	3 × 2	⑥	허용 불가능	개선대책 마련 및 이행
9	3 × 3	⑨	허용 불가능	개선대책 마련 및 이행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방법 사례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이행

- 위험성평가 결과를 통해 정해 놓은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불가능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단위 작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전 위험성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위험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원료 입고	전기적	인화성액체(유기용제) Loading 중 정전기 점화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	정전기의 발생 억제·제거 조치 (접지·배관 Bonding)	9 (높음)	3 (낮음)	2024. 05.13	2024. 05.10	홍길동
배합	기계적	반응기 주변 작업 시 미끄러지거나 넘어짐에 의한 떨어짐 위험	고소작업대를 도입하여 반응기 상부 시 고소작업대 사용	9 (높음)	3 (낮음)	2024. 05.13	2024. 05.10	김반응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방법 사례

2. 체크리스트법

1) 정의

- 체크리스트 위험성평가 방법은 **평가대상에 대해 미리 준비한 세부 목록을 사용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임**
 - 일반적으로 각 항목에 대해 ‘○’ 또는 ‘×’ 등으로 표시하여 목록에 제시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함
- 체크리스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체크리스트의 작성**이므로 법령, 고시 및 지침을 참고하여 **경험이 많은 자의 주도하에 체크리스트를 작성**
 - 다만, 체크리스트가 지나치게 단순하게 작성되었거나 주관적으로 작성된 경우 중요한 유해위험 요인을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함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방법 사례

2. 체크리스트법

1) 정의

- 체크리스트 예)
이 프레스는 위험한가? (×) → 이 프레스는 작업 시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
- 체크리스트법은 단순한 기법이나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하므로 전문가가 없을 경우 위험요인을 누락하기 쉬움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방법 사례

2. 체크리스트법

2) 유해위험요인 파악

(1) 위험성평가 대상 선정

사업장의 공정, 작업, 장소, 기계·기구, 물질, 부품, 작업 행동, 가스, 분진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간 있었던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의 대상을 선정함

(2) 유해위험요인 파악

평가의 대상이 된 작업, 기계·기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결함 상태, 오류 등을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목록을 질문형 등으로 작성

※ 평가항목을 작성할 때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현장 노동자의 아차사고, 위험을 느꼈던 순간 등 경험을 반영하도록 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자료 등도 참고 할 수 있음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방법 사례

2. 체크리스트법

2) 유해위험요인 파악

(2) 유해위험요인 파악(체크리스트법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기록 양식)

(평가대상) : 자동차 부품 가공공장 / (평가자) : 박관리, 정감독

번호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 확인결과			개선 대책	개선 완료일	담당자
		적정	보완	해당없음			
1	프레스 방호장치(광전자식, 양수조작식 등)가 설치되었는가?						
2	프레스 방호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3	유압 프레스에 안전블록을 구비하고 있는가?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방법 사례

2. 체크리스트법

3) 위험성 결정(허용 여부 결정)

- **작성된 평가항목에 따라** 기계에 적절한 방호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작업절차 준수를 노동자에게 당부하였는지, 기타 안전보건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현장을 둘러보며 위험성을 확인**
 -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를 결정
- 무시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적정하게 안전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적정**’, 개선이 필요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보안**’ 으로 분류, 체크리스트 항목을 가지고 현장을 점검하다가 **누락된 사항이 발견되면 수시로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지속적으로 활용**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방법 사례

2. 체크리스트법

3) 위험성 결정(체크리스트법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기록 예시)

(평가대상) : 자동차 부품 가공공장 / (평가자) : 박관리, 정감독

번호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 확인결과			개선 대책	개선 완료일	담당자
		적정	보완	해당없음			
1	프레스 방호장치(광전자식, 양수조작식 등)가 설치되었는가?		√				
2	프레스 방호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3	유압 프레스에 안전블록을 구비하고 있는가?	√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방법 사례

2. 체크리스트법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이행

- 위험성평가 결과를 통해 정해 놓은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불가능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이행 예시(체크리스트법)

(평가대상) : 자동차 부품 가공공정 / (평가자) : 박관리, 정감독

번호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 확인결과			개선 대책	개선 완료일	담당자
		적정	보안	해당 없음			
1	프레스 방호장치(광전자식, 양수조작식 등)가 설치되었는가?		✓		· 양수조작식 및 광전자식 방호장치 설치	2024. 05.10	박관리
2	프레스 방호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작업 전 정상 작동상태 확인 후 작업 시작토록 작업절차에 반영 · 관리감독자 등에게 해당 절차 교육	2024. 05.10	정감독
3	유압 프레스에 안전블록을 구비하고 있는가?	✓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방법 사례

3.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1) 정의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은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판단할 때, 위험성 수준을 ‘상, 중, 하’ 또는 ‘고, 중, 저’ 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방법 사례

3.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2) 유해위험요인 파악

(1) 위험성평가 대상 선정

사업장의 공정, 작업, 장소, 기계·기구, 물질, 부품, 작업 행동, 가스, 분진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간 있었던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의 대상을 선정함

(2)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몇 명의 노동자가 작업하는지’, ‘어떻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그로 인해 어떤 부상·질병 등의 잠재적 및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파악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방법 사례

3.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2) 유해위험요인 파악

(2) 유해위험요인 파악(위험성 수준 3단계 평가법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기록 양식)

(평가대상) : 비계설치공사 / (평가자) : 박안전, 김반장

번호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상·중·하)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1	비계의 작업발판 위에서 이동 또는 작업 중 떨어짐 위험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2	비계 조립 작업 중 강관 등 자재가 떨어져 이동하는 노동자에게 맞음 위험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3	비계 조립 작업 시 강관이 고압선에 접촉되어 감전 위험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방법 사례

3.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3) 위험성 결정

(1) 위험요인별 등급

위험성의 수준을 '상, 중, 하' 또는 '빨강, 노랑, 초록' 등과 같이 3단계 등급으로 구분하고 파악한 유해위험요인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노동자의 경험 등을 들어 판단하고 기록 양식에 표시

※ 각 단계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방법은 위험성평가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정해 놓은 기준을 사용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보건 조치사항도 고려하여 판단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방법 사례

3.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3) 위험성 결정

(2) 허용 여부 결정

유해위험요인별로 등급을 매겼다면, 그 등급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예) 사업장에서 위험성을 '상, 중, 하'로 나누고 그 중 '하'의 위험도만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기로 사전에 결정하였다면, 어떤 기계를 작동할 때의 위험성이 '상'으로 분류되었을 때,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이므로 위험성을 신속히 '하'로 낮추기 위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함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방법 사례

3.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3) 위험성 결정

(2) 허용 여부 결정(위험성 수준 3단계 평가법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기록 예시)

(평가대상) : 비계설치공사 / (평가자) : 박안전, 김반장

번호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상·중·하)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1	비계의 작업발판 위에서 이동 또는 작업 중 떨어짐 위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상 중 하				
2	비계 조립 작업 중 강관 등 자재가 떨어져 이동하는 노동자에게 맞음 위험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상 중 하				
3	비계 조립 작업 시 강관이 고압선에 접촉되어 감전 위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 중 하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방법 사례

3.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이행

○ 위험성평가 결과를 통해 정해 놓은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불가능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이행 예시(위험성 수준 3단계 평가법)

(평가대상) : 비계설치공사 / (평가자) : 박안전, 김반장

번호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의 수준 (상·중·하)	개선 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1	비계의 작업발판 위에서 이동 또는 작업 중 떨어짐 위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 임의 해체구간에서 작업 시 반드시 부착설비에 안전대 체결	2024. 05.10	2024. 05.10	김반장
2	비계 조립 작업 중 강판 등 자재가 떨어져 이동하는 노동자에게 맞음 위험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 비계설치 작업 중 비계 하부에 작업자 출입하지 못하도록 감시자 배치	2024. 05.10	2024. 05.10	박안전
3	비계 조립 작업 시 강판이 고압선에 접촉되어 감전 위험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하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방법 사례

4. 핵심요인 기술법(OPS)

1) 정의

- 핵심요인 기술법은 위험성 수준이 높지 않고 유해위험요인이 많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간략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방법**

※ 전등교체, 부품교체 등 유해위험요인이 적고 간단한 작업에 대해서는 한 장으로 위험성평가 내용을 기록할 수 있음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방법 사례

4. 핵심요인 기술법(OPS)

1) 정의

○ 핵심요인 기술법 안내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방법 사례

4. 핵심요인 기술법(OPS)

2) 유해위험요인 파악

(1) 위험성평가 대상 선정

사업장의 공정, 작업, 장소, 기계·기구, 물질, 부품, 작업 행동, 가스, 분진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간 있었던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의 대상을 선정함

(2) 피해 정도의 파악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몇 명의 노동자가 작업하는지’, ‘어떻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그로 인해 어떤 부상·질병 등의 잠재적 및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파악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방법 사례

4. 핵심요인 기술법(OPS)

2) 유해위험요인 파악

(2) 피해 정도의 파악(OPS법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기록 양식)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가?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가?
정비 중인 컨베이어	
지게차 운전	
:	: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방법 사례

4. 핵심요인 기술법(OPS)

3) 위험성 결정

(1) 현재의 안전조치 파악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파악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위험 예방 조치와 활동을 파악

※ 그 이유는 어떤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지금도 안전보건 조치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임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방법 사례

4. 핵심요인 기술법(OPS)

3) 위험성 결정

(2) 추가 안전조치 파악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안전보건 조치를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기존의 시행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또는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알 수 있으며 기존 시행대책의 효과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단계임

※ 사전준비 단계에서 결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과 비교하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대책이 노동자를 적절히 보호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추가 개선대책 수립이 불필요하여, 이 경우 '추가 조치 없음' 또는 '현재 조치 유지' 등으로 기재하여 결정사항을 기록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방법 사례

4. 핵심요인 기술법(OPS)

3) 위험성 결정

(2) 추가 안전조치 파악(OPS법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기록 예시)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가?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가?	현재 시행중인 조치는 무엇인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정비 중인 컨베이어	· 정비 작업자가 설비를 정지하고 정비하던 중 불시 가동된 컨베이어 회전체에 끼임	· 정비작업 시 설비 정지 · 노동자에게 작업절차 교육 실시	
	· 정비 작업자가 컨베이어 정비 후 방호장치를 복구하지 않아 컨베이어 담당 노동자가 끼임	· 작업 전 체크리스트 이용 안 · 전점검 실시	· 현재 조치 유지
지게차 운전	· 보행 중인 노동자가 화물을 싣고가는 지게차와 충돌	·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 배치 · 지게차 경광등, 경보장치 설치	
	· 여름철 옥외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노동자가 열사병에 걸림	· 헤드가드 위에 가림막 설치	
	· 지게차가 배수로를 밟아 넘어지면서 탈출하던 운전자 또는 보행 중인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림	·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 배치 · 운전자 안전벨트 착용 · 배수로에 그레이팅 설치	· 현재 조치 유지
: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방법 사례

4. 핵심요인 기술법(OPS)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이행(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이행 예시)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가?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가?	현재 시행중인 조치는 무엇인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담당자		
				담당자	개선 기간	완료 일자
정비 중인 컨베이어	(생략)	· 정비작업 시 설비 정지 · 노동자에게 작업절차 교육 실시	· LOTO(Look Out, Tag Out) 실시 · 관련 부서간(또는 노동자 간) 정비일정 공유 절차 마련	김무공	2024. 05.10	2024. 05.09
		· 작업 전 체크리스트 이용 안전점검 실시	· 현재 조치 유지	-	-	-
·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 배치 · 지게차 경광등, 경보장치 설치		· 지게차 운행 구역과 노동자 작업장소, 이동동선 구획 · 반사경, 후방카메라 설치	박홍무	2024. 04.11	2024. 04.09	
· 헤드가드 위에 가림막 설치		· 캐빈 및 에어컨이 구비된 지게차 렌탈	박홍무	2024. 05.28	진행중	
		·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 배치 · 운전자 안전벨트 착용 · 배수로에 그레이팅 설치	· 현재 조치 유지	-	-	-
:		:	:	:	:	:

4.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신청 및 인정·혜택

■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 안전보건공단은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위험성평가 인정에 따른 컨설팅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음
 - ※ 건설업의 경우 전년도에 공시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가 200위 초과인 종합건설업체 본사 또는 총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 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의 공단 광역본부장, 지역본부장, 지사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함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인정을 위한 컨설팅은 무상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4.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신청 및 인정·혜택

■ 위험성평가 인정

- 안전보건공단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 사업장에 대한 현장심사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이 경우 안전보건공단에서 규정하는 위험성평가 인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 |
|---|
| 1. 위험성평가 관련 고시에서 정한 방법, 절차 등에 따라 위험성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
| 2. 현장심사 결과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50점을 미달하는 항목이 없고 종합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사업장 |

-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안전보건공단은 위험성평가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의 유효기간은 3년임

4.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신청 및 인정·혜택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등에 대한 혜택

- 위험성평가 인정 유효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및 그 밖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혜택 >

- ☞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은 산재보험료 20% 감면
- ☞ 정부 포상 및 표창 추천
- ☞ 재정보조 1천만원 추가 지원
- ☞ 기술보증기금 최초 3년간 100% 보증 및 보증요율 0.2% 감면

5. 위험성평가의 기대효과

■ 기대효과

-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누구도 다치거나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임
- 노동자의 생명보호의 근본적인 목적 이외에도 만약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는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생산성이 저하되고 기계가 손상되고 산재보험료가 오르면 사업주와 그의 사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이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업주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어 그에 대한 해결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장의 실질적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향상**과 더불어 **노동자 보호 및 중대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THANK
YOU